

안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11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종전의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규정하였던 물품관리에 대한 사항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시행(‘06. 1. 1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·과·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조제3항).
- 나.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제2항).
- 다.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(분임물품 출납원)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를 받아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(안 제11조).
- 라. 전용품의 보관책임의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함(안 제20조).
- 마. 『지방재정법』에 관련한 조항을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, 제54조,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, 제61조, 제90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6. 10. 20 ~ 2006. 10. 30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물품관리조례 개정표준안(행정자치부)

안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”를 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, 물품운용관 및 ”으로 하여 동조제4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시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실·과·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

③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)은 물품관리관(물품운용관)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4조 중 “동장”을 “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, 구청장, 동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지방재정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2조 및 제113조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8조”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기증품의 취득)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)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주관부서의 장은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)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.

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각호의 1” 을 각각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제3항제2호 중 “3백만원”을 “5백만원”으로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각호의 1” 을 각각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제4항 중 “영 제96조제2항”을 “영 제2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보관책임)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, 공용품은 물품출납원·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,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물품출납원”을 “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”으로 “시장 또는 청·소의 장”을 “시장, 직속기관·사업소·구의 장 또는 동장”으로 하고, 제2항 중 “물품출납원은”을 “제1항의 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시장 또는 청·소의 장”을 각각 “물품관리관”으로 하고, 동조제4항 중 “청·소의 장”을 “물품관리관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”을 “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”으로 한다.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(장부의 작성)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재사항이 많지 아니한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작성은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.

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(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) 물품관리관, 물품출납원,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27조의 제목 “(물품출납사무의 검사)”를 “(물품관리사무의 검사)”로 하고,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.

제30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 품종구분 기준 중 (1)비품 제2항을 삭제하고, 동별표 동기준 중 (2)소모품 제4항 중 “7만원”을 “1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 · 과		회계과
입 안 자	실·과 장 직위 · 성명	회계과장 최 선 준
	담 당 성 명	계약관리담당 박 재 근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 육 (481-3079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② 주관부서의 장은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	③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)이 물품 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.
	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1조의2(중요물품의 범위)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.	<삭 제>
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 물품 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,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을 하여야 한다. 1. ~ 8. (생 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 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 ③ (생 략) 1. (생 략) 2. 동일 광역시, 도(시, 군, 자치구 포함)에 소요 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3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	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 -----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백만원 ----- -----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물품의 망실·훼손보고) ①(생략)</p> <p>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, 의견을 붙여 <u>시장</u> 또는 <u>청,소의 장</u>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·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<u>시장</u> 또는 <u>청,소의 장</u>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<u>청,소의 장</u>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<u>시장</u>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22조(물품의 망실·훼손보고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<u>물품관리관</u> -----</p> <p>③----- -----<u>물품</u> <u>관리관</u>-----</p> <p>④<u>물품관리관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24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①(생 략)</p> <p>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,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, <u>제11조의2</u>의 규정에 의한 정수 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“정수물품”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.</p>	<p>제24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<u>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</u> <u>관리대상물품</u>----- -----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5조(장부의 작성)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 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재사항이 많지 아니한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작성은 전산 입력처리로 갈음한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6조(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) 물품관리관, 물품출납원,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</p>
<p>제27조(물품출납사무의 검사) ①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(과장이 있는 청,소 포함)이, 기타 청,소의 경우에는 청,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.</p> <p>②(생 략)</p>	<p>제27조(물품관리사무의 검사)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30조(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)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